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다양한 영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영화관 위치 및 시설(안 제2조, 안 제3조)

나. 작은영화관 관람료(안 제5조)

다. 작은영화관 운영 및 지원(안 제7조)

라.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1. 17.~2022. 2. 6.)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주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성주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5-4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2.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관람료 결정 및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2. 영화관을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주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신청서
(제7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시설 개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 설비	연 면 적	㎡	사용층수	층
	사용면적	㎡		㎡
	주요시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성주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8"><u>성주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u>
(제7조 관련)</td></tr>
<tr><td colspan="2">법 인 (단 체 명)</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신 청 자
(대표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기 간</td><td>당초</td><td colspan="2">부터 까지</td><td>연장</td><td colspan="2">부터 까지</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기 타 사 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성주군 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7">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td></tr>
</table>

관련법령 발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2015.11.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2015.11.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1.1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한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2015.11.12, 2016.11.10>

⑥ 제1항 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성주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1.12>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김 미 순